

2024년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 계획표

※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(별표1~5)는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289호(2023.12.29)]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른 것이며, 2024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]

장기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본인부담율
월 한도액	2,069,900원	1,869,600원	1,455,800원	1,341,800원	1,151,600원	일반대상자 : 15% 의료,경감대상자 :4% 6%,9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[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]

시간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급여비용	16,630원	24,120원	32,510원	41,380원	48,250원	54,320원	60,530원	66,770원
본인부담금 15%	2,495	3,618	4,877	6,207	7,238	8,148	9,080	10,016
본인부담금 9%	1,496	2,170	2,893	3,724	4,342	4,888	5,447	6,009
본인부담금 6%	997	1,447	1,950	2,482	2,895	3,259	3,631	4,006

[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]

분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4,67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6,340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원

[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]

분류	금액(원)
30분 미만	40,760원
30분 이상 ~ 60분 미만	51,110원
60분 이상	61,490원

[방문요양, 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]

서비스 제공시각	금액(원)
18시 이후 22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
22시 이후 06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	